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시)
----	----------------

(2013년 4월 23일)
(상하이 aT)

구분	핵심 내용
II 검역	☐ “중국 수입유제품 검역검사 강화” - 외국산 수입유제품 수출국가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평가, 수출기업에 대한 승인 등록제 실시예정 (2013.05.1) -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 152호 공포 (2013.1.24) -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실시관련 제53호 공고 (2013.4.15)

항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1. 통관 검역 일반	☐ 주요 내용 - 총국령 제 152호 ☒ 유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원산지증명과 검역검사본부의 위생증명서로 중국 수출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수산물수출업체처럼 중국에 해외업체를 등록해야 수출가능 - 해외 생산업체는 수출국 정부가 설립을 비준하고 수출국 법규에 부합하는 기업 -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 수출 유제품이 중국 식품안전표준에 부합여부 보증 - 등록신청 시 수출제품 종류와 브랜드를 명확히 밝혀야 함 - 등록된 해외 생산업체는 국가질검총국 사이트에 공개 ☐ 주요 내용 - 실시관련 제 53호 공고 ① 유제품 수출 국외생산기업의 등록정책 실시 -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외식품 생산기업 등록정책 실시 - 국가질검총국에서 등록에 관한 규정을 공포할 예정 - 생산기업에 일정한 과도기를 주어 등록작업 완료 예정 ② 최초수입 유제품의 정의 및 조치사항 발표 - 방법이 실시되는 날부터 국외에서 출발하여 운송되는 유제품이 某항구로 처음 수입될 경우 첫 수입으로 간주 - 검역신청 시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제출 ③ 검측보고서 제공가능 검역기구 명확화 - 외국 검측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검측기구는 국외 정부실험실, 제3자 검측기구나 기업실험실, 또는 경내 식품검역기구 자격인정을 받은 검측기구 ④ 검역심사비준 수속처리가 필요한 수입유제품 종류발표 - 생유 : 0401200000 - 생유제품 : 0403100000, 0406100000, 0406200000, 0406300000, 0406400000, 0406900000 - 파스퇴르 살균유 : 0401100000, 0401200000 *자세한 내용은 해당규정 번역본 참조(첨부)

항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 시사점 / 대처 방향 ○ 제 152호 (제5조 관련) 수출국가의 안전관리상황에 대한 평가 : 한국은 이미 관련 평가를 마치고 수입허용절차를 거친 상황임 ○ 제 152호 (제6조 관련) 수출기업체에 대한 승인·등록제 : 유제품 업체등록은 '12년부터 시행중인 식품업체 등록과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 검역총국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기업체 등에 통지될 예정 - 금번 법규시행에서 중국은 유제품 관리강화를 위해 해외업체를 사전등록 후 수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따라 수출업체는 수산물 수출과 같이 사전등록이 필요하므로, 향후 중국측 통지 이후 해당업체는 안내서류를 구비하여 질검총국 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제 53호 관련 - 금번 시행되는 '유제품 검역관리방법'으로 인해 5.1이후 1차로 수출되는 <u>검역심사비준 수속 처리</u>가 필요한 모든 유제품은 최초 수출로 간주되어 100%검역이 예상됨. 관련제품의 정밀 검사(검역) 횟수증가에 따른 수출통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1차 최초 수출이후 동일항구로 처음 수입이 아닌 유제품 역시 정한 기준의 항목의 <u>검측 보고서</u>를 제출하여야 함. 최초 수입유제품이란 5.1이후 1차로 수출되는 모든 유제품을 최초 수출로 간주하는 것임. 처음 수입이 아닌 유제품의 검역신청 시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항목의 검사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국외식품 생산기업 기한 내 등록조치 -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에서 발표하는 기한 내에 생산기업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요구하는 검측보고서 제출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발표 일자/ 출처 : 1월 24일, 4월 15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사이트

○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중국령 제 152호 공포** (2013. 1. 24)

(주요내용 추가)

- **수출업체**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허가한 위생증서(아래내용 포함)를 보유해야 함
 - (1) 건강한 동물로부터 취한 원료
 - (2) 낙농품은 가공 처리를 거쳐 동물 전염병에 대해 안전해야 함
 - (3) 생산기업은 소재지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 (4) 낙농품은 검사를 거쳐 사람이 식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유제품 수입시 구비서류 (바이어 또는 대리인이 세관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 시)
 - 1. 계약서, 영수증, 패키리스트, 선하증권(B/L) 등 필요 증빙
 - 2. 본 법규 7조 규정에 부합하는 위생증서
 - 3. 최초 수입 유제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검사보고서. 최초 수입이라 함은, 해외 생산업체, 제품명, 배합, 해외 수출상, 중국 수입상 등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유제품이 같은 항구에 처음으로 수입됨을 뜻함
 - 4. 첫 수입이 아닌 유제품은 첫 수입 시 검사 보고의 복사본 및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하는 검사 보고 자료를 제출. 필요한 검사보고 자료는 국가질검총국이 낙농품 리스크 검측 등 상황을 판단한 후 기관 사이트에 공포
 - 5. 수입 유제품 안전위생 항목(병원균, 진균류, 오염물, 중금속, 불법첨가물 포함)에 불합격하면 재차 수입할 때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된 검사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연속 5번 안전위생항목 불합격이 없을 경우, 재차 수입할 때 해당 검사보고 자료의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하는 검사보고를 제출하면 됨
 - 6. 포장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문 라벨 샘플, 원문 라벨 중문 번역본, 중문 라벨 샘플 등 자료 제출
 - 7. 검역심사가 필요한 유제품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제출
 - 8.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유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발급한 허가증명 문건 제출
 - 9. 보건기능이 있는 제품은 관련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명 문건 제출
 - 10. 시상, 영예, 인증 표지 등 내용을 표시할 때 해외 수여 경로 확인이 가능한 증명문서 제출

○ 수출입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 방법 실시 관련 제53호 공고 (2013. 4. 15)

○ 주요내용

① 유제품 수출 국외생산기업의 등록정책 실시

-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외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정책 실시추진
- 국가질검총국에서 등록에 관한 규정을 공포할 예정
- 생산기업에 일정한 과도기를 주어 등록작업 완료 예정

② 최초수입 유제품의 정의 및 조치사항 발표

- 방법이 실시되는 날부터 국외에서 출발하여 운송되는 유제품이 某항구로 처음 수입될 경우 첫 수입으로 간주
- 검역신청 시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제출

③ 검측보고서 제공가능 검역기구 명확화

- 외국 검측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검측기구는 국외 정부실험실, 제3자 검측기구나 기업실험실, 또는 경내 식품검역기구 자격인정을 받은 검측기구

④ 검역심사비준 수속처리가 필요한 수입유제품 종류발표

- 생유 : 0401200000
- 생유제품 : 0403100000, 0406100000, 0406200000, 0406300000, 0406400000, 0406900000
- 파스퇴르 살균유 : 0401100000, 0401200000

질검총국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실시에 대한 관련요구 공고

국가질검총국이 2013년 1월 24일에 공포한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국가질검총국령 제 152호, 이하 <방법>이라고 약칭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방법>의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고 <방법>을 더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질검총국은 국가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의 변화에 맞춰 <방법>에 적용되는 유제품의 범위에 대하여 조정을 하여 국가질검총국의 홈페이지에 공포한다. <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분유는 초유분유(牛初乳粉), 분유의 기본원료(基粉原料)를 포함한 유기(乳基)유아조제식품을 포함하며, 특수약용 유아조제식품은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외식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등록정책을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국외 유제품생산기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공포할 것이며, 아울러 기업에 일정한 과도기를 주어 등록작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다. 과도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국외 유제품 생산기업도 <방법>의 요구에 따라 계속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3. 검역심사비준 수속을 해야 하는 수입유제품(첨부 1)은 <수출입동식물검역심사비준관리방법>(국가질검총국령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심사비준 수속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검역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수입유제품 종류를 확정·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포한다.
4.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수입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방법>이 실시되는 날부터 국외에서 출발하여 운송되는 모(某) 상품이 모 항구로 처음으로 수입이 되면 모두 첫 수입으로 간주한다. 동 제품이 동일항구(동일직속국 관할구를 지칭)로 수입된 후 연속 수입되면 첫 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국외생산기업, 상품명칭(상품브랜드 포함), 조제방법, 국외수출상, 국내수입상 등 정보가 완전히 일치되는 상품을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한다.
5. 처음으로 수입된 유제품, 처음으로 수입한 수입상 혹은 그 대리인은 검역을 신청할 때 제품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에서 인용한 식품 중 오염물과 진균독소(真菌毒素)의 표준을 포함한다.

처음 수입이 아닌 유제품,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검역을 신청할 때 처음 수입 시 제공한 검측보고와 검역신고서 복사본, 국가질검총국에서 규정한 항목(첨부 2)의 검측보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처음 수입이 아닌 검측보고 항목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유제품 위험관측 등 정황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확정하여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포한다.

처음 수입되는 유아조제식품 분유원료(乳基혼합원료), 처음 수입하는 수입상이나 대리인은

검역을 신청할 때 상품 기준에서 규정한 미생물, 오염물, 진균독소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처음 수입이 아닌 분유원료(基粉原料)는 미생물항목 검측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술한 검측보고서는 수입유제품의 생산날짜 혹은 생산번호와 매치가 되어야 한다.

6. 수입유제품 검측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검측기구는 국외 정부실험실, 제3자 검측기구나 기업 실험실, 또는 경내 식품검역기구 자격인정을 받은 검측기구일 수 있다.
7. 수입유제품의 수입상이나 대리인이 검역을 신청할 때 <방법>에서 요구한 검측보고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일정기한 내에 <방법>에서 규정한 검측보고를 보충할 것을 허용한다. 검측 기구는 자료를 심사하여 검역신청을 승인하는데, 수입상 혹은 대리인이 보충 제출한 검측보고를 받은 후에 수입유제품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그 기간 동안 수입유제품은 <방법>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검측기구가 인정한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한다.
8. 수입유제품 안정위생 항목에 불합격한 수입유제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연속 5번(동일하지 않은 생산비준번호(生产批次) 혹은 생산 날짜의 5개 제품) 식품안전국가 표준에서 열거한 항목(<표준>에서 인용한 오염물과 진균독소항목 포함)에 대한 검측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측 불합격 항목이 불법첨가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항목을 포함하여 검측보고 해야 한다.
9. 수입유제품 라벨에 외국에서 획득한 상, 명예, 인증표시 등의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확인된 관련증명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외교경로 확인이라 함은 중국주재외국대사관(영사관)이나 외국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받은 확인을 말한다.
10. 수입유제품의 수입상은 대중에게 공개된 미디어(기업 홈페이지 포함)를 통해 수입유제품의 종류, 생산지, 브랜드 등 정보를 제때에 공지하여야 한다.
11. 소각하거나 반송해야 할 불합격 수입유제품은 수입상이 소각이나 반송을 완료한 후 5일 근무일내에 소각, 반송 상황을 검역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 첨부 1. 검역심사비준 수속처리가 필요한 수입유제품의 종류
2. 처음 수입이 아닌 수입유제품 검측항목표

질검총국
2013년 4월 15일

첨부1. 검역심사비준수속을 수속처리가 필요한 수입유제품의 종류

1. 생유(生乳) (건강한 목축유에서 짜낸 어떤 성분변화도 없는 보통우유)
 - 관련 HS코드 : 0401200000
2. 생유제품 (직접 생유를 주원료로 하고 열처리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 관련 HS코드 : 0403100000, 0406100000, 0406200000, 0406300000, 0406400000, 0406900000
3. 파스퇴르살균유 (양이나 소의 생유를 원료로 하고 파스퇴르식으로 살균한 액체상품)
 - 관련 HS코드 : 0401100000, 0401200000

[주] 위에서 말한 HS코드는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하는 수입유제품 관련 HS 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이 HS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수입식품이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가공방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첨부 2. 처음 수입이 아닌 수입유제품 검측항목표

유제품종류	검측항목
과스퇴르살균유	단백질
	지방
	산도
	아플라톡신M1
	미생물 군체 총수(菌落總數)
	대장균 군체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
멸균유	단백질
	지방
	산도
	아플라톡신M1
	상업무균(商業無菌)
조제유	단백질
	지방
	아플라톡신M1
	상업무균(멸균공예로 생산된 상품에 적용)
	미생물 군체 총수(멸균공예로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적용)
	대장균군체(멸균공예로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적용)
	황색포도구균(멸균공예로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적용)
	살모넬라균(멸균공예로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적용)
발효유	단백질
	지방
	산도
	아플라톡신M1
	대장균군체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
	효모균
	곰팡이
	유산균수(발효후 열처리한 제품 제외)
치즈	아플라톡신M1
	대장균군체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곰팡이(곰팡이숙성치즈 제외)
	효모균(곰팡이숙성치즈 제외)
재제치즈(再制干酪)	지방
	아플라톡신M1
	미생물 군체 총수
	대장균 군체

유제품종류	검측항목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곰팡이
	효모
크림, 버터, 무수버터(无水奶油)	지방
	산도(무수(无水)크림 제외)
	상업무균(캔 공예나 고온멸균공업으로 생산한 묽은 크림)
	미생물 균체 총수(발효한 묽은 크림을 원료로 한 상품 제외)
	대장균 균체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
	곰팡이
연유(煉乳)	단백질
	지방
	산도
	아플라톡신M1
	상업무균(담연유와 조제담연유에 적용)
	미생물 균체 총수(당분연유와 조제당분연유 적용)
	대장균 균체 (당분연유와 조제당분연유 적용)
	황색포도구균(당분연유와 조제당분연유 적용)
	살모넬라균 (당분연유와 조제당분연유 적용)
분유	단백질
	지방
	복원유산도(조제분유 제외)
	아플라톡신M1
	미생물 균체 총수(활성균종을 넣은 상품 제외)
	대장균 균체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
	아질산염
유청분&유청단백분 (乳清粉和乳清蛋白粉)	단백질
	유당(유청단백분 제외)
	아플라톡신M1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
초유분유(牛初乳粉)	단백질
	면역글로불린
	지방
	복원유산도
	납
	아질산염

유제품종류	검측항목
	아플라톡신M1
	효모
	곰팡이
	미생물 군체 총수
	대장균 군체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
유기(乳基)영유아조제식품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1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판토텐산
	비오틴
	콜린 (무첨가 상품 제외)
	이노시톨(무첨가 상품 제외)
	타우린(무첨가 상품 제외)
	L-카르니틴(무첨가 상품 제외)
	칼슘
	린
	요오드
	셀렌(무첨가 유아조제식품 제외)
	철
	동
	아연
	상염무균(액체유아조제식품)
	미생물 군체 총수(활성균종을 넣은 상품 제외)
	대장균 군체
	살모넬라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0-6개월 유아조제식품 적용)
	질산염(채소나 과일을 첨가한 유아조제식품 제외)
	아질산염
	납
	아플라톡신M1